

##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등 공개

다음과 같이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사항을 공개합니다.

※ 건축법 제25조2를 위반한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2023. 12. 29.

국토교통부장관

### 1.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

구 분	공사시공자	업체(법인)	태성씨엔씨(주)	대표자명	김우성
주 소	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5나길 15, 405호				
법인등록번호	110111 - 7007051				
조치 사유	- 건축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치 미흡으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				
조치 내용 및 일시	- 내용: 건축법 제111조 제4호에 따른 공사시공자 고발, 공사중지 명령 - 일시: 2021.5.14				
문의처	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과(☎02-2620-3561)				

구 분	공사시공자	업체(법인)	(주)일군토건	대표자명	여태용
주 소	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17-11				
법인등록번호	200111 - 0201180				
조치 사유	- 건축법 제40조 및 제41조 위반				
조치 내용 및 일시	- 내용: 건축법 제25조의2제3항 및 제110조제8호에 따른 조치 - 일시: 2022.11.14.(시정명령), 2022.12.13.(경찰서 고발)				
문의처	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건축허가팀(☎033-670-2167)				

\* 본 공개 사항은 건축법 제25조의2 제9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 함

### 2.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(☎044-201-4752), 상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지자체 문의